

[별표 4]<신설 1999.10.20>

분야별로 감리원을 배치할 공사에서 제외되는 공사의 범위
(제22조의5제1항 및 제2항관련)

분 야	공 종	공 사 의 범 위
토 목	조 경 공 사	조경구조물공사·식재공사·조경시설물공사·휴게시설공사·놀이시설공사·안내표지시설공사 및 잔디심기공사등
	부대시설공사	담장공사·난간공사·방음벽공사·적벽돌방음담장공사·출입문공사·시멘트블록방음담장공사 및 낙석방지철책공사등
건 축	공통가설공사	가설건물공사·가설울타리공사·세륜시설공사·가설전기공사·가설용수공사 및 가설도로공사등
	가시설물공사	비계공사·규준틀공사·리프트공사 및 안전 시설물설치공사등
	가 구 공 사	신발장공사·수납장공사 및 붙박이장공사등
	유 리 공 사	보통유리공사·복층유리공사·접합유리공사 및 강화유리공사등
	타 일 공 사	타일공사
	돌 공 사	돌 깔기공사·석재판공사 및 테라조판붙이기공사등
	도 장 공 사	건물내부도장공사 및 건물외부도장공사등
	도 배 공 사	도배공사
	주방용구공사	주방용구설치공사
	잡 공 사	수취함설치공사·표시판설치공사 및 무전원흡출기설치공사등
기계설비	위생기구공사	수전류공사·세면기공사·양변기공사·소변기공사·욕조공사·수건걸이공사 및 화장경공사등